

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.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호국·보훈 정신을 고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(안 제4조)

· 당초 : 월 7만원 → 변경 : 월 8만원

나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 “법률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한 유공자(이하 “유공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지원을 함”을 “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참전유공자”란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”을 “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월 7만원”을 “월 8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각각 “시장에게 제출하여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매년 1/4분기 중”을 “매 분기 마지막 달에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■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[별지 제1호서식]

[illegible]

개 인 정 보 수 집 및 이 용 동 의 1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: 참전자명예수당 지급 신청 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본인예금계좌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수당지급 자격 소멸 시 4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전명예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동의☐, 미동의☐	
--	--